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인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95년부터 추진된 문산읍 사목리 소재 도지정문화재인 황희선생 영당지의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장수황씨 사목종중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 법원읍 동문리 소재 자운서원의 내방객과 율곡교육연수원의 교육생이 공동으로 주차장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협소한 주차장부지로 인한 민원 불편이 초래하고 있는바, 주차장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주차장부지 확충을 통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취득의 재산명	위 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황희선생 영당지 (토 지)	문산읍 사목리 185외 14필지	21,763㎡ (6,583평)	727,112.5	기부채납
황희선생 영당지 (건 물)	문산읍 사목리 185번지 일대	반구정외 10동 371.23㎡	67,000	기부채납
자운서원 주차장 조성 부지	법원읍 동문리28-2	5,775㎡ (1,747평)	136,000	취 득

□ 세부내역

- 황희선생 영당지

• 토 지

- 위 치 : 문산읍 사목리 185외 14필지(토지조서 별첨)
- 면 적 : 21,763㎡(6,583평)
- 재산액 : 727,112,500원(2003년 공시지가)

• 건 물

- 위 치 : 동소 10필지
- 건축물 현황 : 반구정외 10동(건축물조서 별첨)
- 건축 연면적 : 371.23㎡
- 재산액 : 67,000,000원(2003년 과표)

• 취득방법 : 증여(기부채납)

• 증 여 자 : 장수황씨 사목종중(회장 황의형)

○ 자운서원 주차장조성 부지

- 위 치 : 법원읍 동문리 28-2
- 조성면적 : 전체부지 5,775㎡(1,747평)
- 주차규모 : 승용차 50대(1,000㎡)
- 조성예산 : 344,352천원(도비 172,176, 시비 172,176)
- 취득예정가 : 136,000천원(공시지가에 의한 가격)
※ 취득시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취득
- 취득방법 : 협의취득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제66회 임시회 때 의결된 계획안이 금번 황희선생 영당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자

운서원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 규정등에 의거 작성·제출되었으므로 법령적합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地方財政法施行令》

[일부개정 2001.9.15 대통령령 제17363호]

제84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地方自治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35條(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改正 1994. 3. 16, 1999.8.31>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坡州市公有財産管理條例》

[2001. 10.10 조례 제410호]

제35조(公有財産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정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내용타당성

- 먼저, 문산읍 사목리 185번지 일원에 소재한 황희선생 영당지의 토지와 건물 취득권은 '95년부터 추진해 온 영당지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장수황씨 사목종중으로부터 관련토지 15필지 21,763㎡와 건물 11동 371.23㎡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동 영당지는 도지정문화재로서 그동안 많은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 보수·정화가 완료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사안임.
- 이에 따라 시는 동 문화재의 관리주체로서 문화재 정비보수는 물론, 주차장과 화장실관리·경내청소 등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련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자운서원과 같이 상시 관리인력 배치와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등 재산취득에 따른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음, 자운서원 주차장조성부지는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접해 있는 법원읍 동문리 28-2 번지에 소재한 5,775㎡(1,747평)의 토지(답)를 취득하여 승용차 약50대분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확충해 방문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